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25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안도결 · 박지혜 · 박수현  
박정현 · 정준호 · 오세희  
김남근 · 조인철 · 윤준병  
이주희 · 김 윤 · 복기왕  
박지원 · 김동아 · 정진욱  
민형배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2를 제161조의3으로 하고,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파산, 구조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대비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간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대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하 “자기자본이익률”이라 한다)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이 100분의 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2.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 계획
3. 사업구조 개선계획
4.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그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63조의 제목 중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 중 “제163조”를 “제163조제1항”으로 한다.

제446조제19호의8 중 “제161조의2”를 “제161조의3”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제16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또는 그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u>  <u>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이</u>  <u>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u>  <u>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u>  <u>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u>  <u>한다. 다만, 주권이 증권시장에</u>  <u>상장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u>  <u>하였거나 파산, 구조조정 또는</u>  <u>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가</u>  <u>치 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u>  <u>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u>  <u>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u>  <u>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u>  <u>있다.</u></p> <p><u>1.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대</u>  <u>비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u>  <u>(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u>  <u>3개월 간의 일평균을 기준으</u>  <u>로 한다)이 2개 사업연도 이</u>  <u>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u>  <u>만에 해당하는 경우</u></p>

2.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대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하 “자기자본이익률”이라 한다)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이 100분의 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2.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 계획

3. 사업구조 개선계획

4.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인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그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거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생략)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생략)

<신설>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61조의3(자료요구권 등) (현행 제161조의2와 같음)

제163조(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공시) ① (현행 제6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제163조제1항-----

<p>다.</p> <p>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9의7. (생략)</p> <p>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p> <p>20. ~ 64. (생략)</p> <p>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8. (생략)</p> <p><u>&lt;신설&gt;</u></p> <p>39. ~ 49. (생략)</p> <p>② ~ ④ (생략)</p>	<p>---</p> <p>제446조(벌칙) ----- ----- ----- -----.</p> <p>1. ~ 19의7. (현행과 같음)</p> <p>19의8. ----- -----제161조의3----- ----- -----</p> <p>20. ~ 64. (현행과 같음)</p> <p>제449조(과태료) ① ----- ----- ----- -----.</p> <p>1. ~ 38. (현행과 같음)</p> <p>38의2. 제16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또는 그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39. ~ 4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